#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제29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0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1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노인 가족에대한 상담 및 교육

**제3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등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용

**제33조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6일 08:00~18: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서비스 제공시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본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종료 10일전 까지 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연장 될 수 있다. 자동연장 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제35조 (계약자 의무)**
① '갑' 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 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구건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6조 (계약해지요건)**
① '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 의 동의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4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아니하였을 때

**제37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15일 이상 급여제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5일의 범위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2025년 급여비용 금액

| 분 류 |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
|---|---|---|---|---|---|
| | | | 15% | 9% | 6% |
|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 3등급 | 46,590 | 6,989 | 4,193 | 2,795 |
| | 4등급 | 45,000 | 6,750 | 4,050 | 2,700 |
| | 5등급/인지 | 43,400 | 6,510 | 3,910 | 2,604 |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 3등급 | 57,960 | 8,694 | 5,216 | 3,478 |
| | 4등급 | 56,380 | 8,457 | 5,074 | 3,383 |
| | 5등급/인지 | 54,780 | 8,217 | 4,930 | 3,287 |

| 식재료비 | 식사(한끼) | 4,000 | 간식 | 900 |
|---|---|---|---|---|

| 월 한도액 | | | | | |
|---|---|---|---|---|---|
| 인지지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657,400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0600 | 1,177,000 |

| 본인부담금 | 3등급 급여/비급여포함 | 4등급 급여/ 비급여포함 | 5등급 급여/비급여포함 |
|---|---|---|---|
| 8시간~10시간/15%/ 20일 | 173,880 / 351,880 | 169,140 / 347,140 | 164,340 / 342,340 |
| 8시간~10시간/ 9%/ 20일 | 104,320 / 282,320 | 101,480 / 279,480 | 98,600 / 276,600 |
| 8시간~10시간/ 6%/ 20일 | 69,560 / 247,560 | 67,660 / 245,660 | 65,740 / 243,740 |
| 인지지원등급 | 8~10시간 / 12회 | 6~8시간 / 16회 | 15% 급여 98,604 |
| | 98,604 / 205,404 | 98,604/ 240,844 | 9% 급여 59,160 |
| | 식대12회 106,800 | 식대16회 142,240 | 6% 급여 39,444 |
| 점심,간식,저녁 / 점심,간식 | 20일 178,000 / 98,000 // 24일 213,600 / 117,600 | | |

- 등급외는 본인부담금 100%부담.
- 한도 초과일은 1100% 본인부담.